

제33조(출석) 매 학기 수강 과목별 수업시간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, 이에 미달할 때 해당 과목의 성적은 낙제가 된다.

제34조(시험) ① 시험은 중간시험, 학기말 시험, 수시 시험으로 구분 시행한다.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

1. 유기 또는 무기정학의 징계 기간에 있는 학생
2. 미등록 학생(등록금 미납 및 수강신청 미필자)
3. 이미 해당 과목의 수업시간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학생

제35조(결석 및 결시 신고)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할 경우 결석신고서를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, 제2호, 제3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.

1. 각종 병사 관제(병역판정검사, 근무소집 등)로 인한 경우 증빙서류에 명기된 시간
2. 당해 학기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중간시험을 필한 후 군입대하게 되는 경우 입대일 이후의 기간
3.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 이내, 학기당 4일 이내(다만, 시험기간 불가)
4. 본인의 결혼, 가족(조부모, 부모, 형제, 자매 등)의 사망(실종)으로 인한 경우 1주일
5.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학기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1 미만
6.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국내외 회합 및 행사에 참여할 경우 학생지원처장이 인정한 기간
7. 현장견학, 실습, 학습답사 등에 참가하는 경우 당해 학부장이 인정한 기간
8.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경우 취업기간(다만, 봄 정규학기, 여름 계절수업, 가을 정규학기, 겨울 계절수업 중 1개 학기에 한함)
9. 체육특기자의 대회출전, 훈련으로 인한 경우 학기당 총 수업시간수의 2분의 1 이내(다만, 비육성종목의 경우 대회출전은 국제대회(올림픽, 아시안게임), 전국체전 등과 같은 대회출전만 인정하며 훈련은 국가대표(상비군 포함)소집에 따른 훈련만 인정)
10. 기타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해당 인정 기간

② 제1항제3호 및 제9호의 훈련(국가대표로 소집된 선수의 훈련은 제외)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각 호의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 하게 될 경우 결시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학생에 한하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별도의 시험 또는 과제물을 부과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제1호, 제2호 및 제9호의 사유(다만, 훈련은 국가대표(상비군 포함)소집에 따른 훈련에 한함)로 결시하는 경우에는 결시신고서를 반드시 승인해 주어야 하며 제1항제2호의 사유로 결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 및 과제물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결석 및 결시신고서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부장을 경유, 단과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36조(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) ① 소속 학부(과)장 및 교과목 담당 교원은 학생이 「예비군법」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,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.

② 교과목 담당 교원은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한 경우, 학습자료 제공 등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.